

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(안)

| | |
|-----|-----|
| 의 안 | |
| 번 호 | 127 |

제출일자 : 2000. 6. .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개정이유

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함(안 제8조제10호 내지 제13호)

- 산막 1동당 사용자 8평 4명 및 13평 6명까지
- 복합산막 1실(14평)당 사용자 10명까지
- 야영데크 및 텐트장 1개소당 사용자 각 4명까지
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나.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함(안 제9조)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등에 회의실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던 것을 다른 시설물도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함.
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
 - 산막 8평 사용자의 차량 1대 및 13평 사용자의 차량 2대
 - 복합산막 1실(14평) 사용자의 차량 3대
 - 야영데크 및 텐트장 사용자의 차량 각 1대
 - 조례 제8조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

다. 위탁관리 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이내로 함(안 제10조)

라. 시설사용요금표중 현재까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사용료란을 삭제함 (안 [별표2])

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관련법령(발췌) 1부.

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산막 1동당 사용자 8평 4명 및 13평 6명까지
11. 복합산막 1실(14평)당 사용자 10명까지
12. 야영데크 및 텐트장 1개소당 사용자 각4명까지
1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9조중 “행사등에는 회의실에 한하여”를 “행사 등에 한하여”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 할수 있다.

1. 산막 8평 사용자의 차량 1대 및 13평 사용자의 차량 2대
2. 복합산막 1실(14평)사용자의 차량 3대
3. 야영데크 및 텐트장 사용자의 차량 각 1대
4. 제8조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

제10조제3항중 “1년단위”를 “3년이내”로 한다

【별표2】 시설사용요금표를 <별지>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<별 지>

【별표2】

시설사용요금표

(단위 : 원)

| 구 分 | | 사용시간 | 요 금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주 차 장 | ○ 소·중형 (승합차, 봉고) | 1대/1일 | 3,000 | ※ 1일 사용료는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11시 까지로 하며, 11시이후는 1일 추가 요금 징수 |
| | ○ 대 형 (버스, 화물차) | | 5,000 | |
| 산 막 | ○ 8평 | 1동/1일 | 40,000 | |
| | ○ 13평 | | 60,000 | |
| 복 합 산 막 | ○ 14평 | 1실/1일 1시간당 | 100,000 | |
| | ○ 회의실 | | 10,000 | |
| 야 영 장 | ○ 텐트장 | 1개소/1일 | 3,000 | |
| | ○ 야영 데크 | | 5,000 | |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【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8조(입장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빈 및 그 수행자 2.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.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. 국·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 군경 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. 장애인 7. 국가유공자 8.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9. 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·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9조(시설사용료의 면제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등에는 회의실에 한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8조(입장료의 면제)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3. 4. 5. 6. 7. 8. 9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. 산막 1동당 사용자 8평 4명 및 13평 6명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. 복합산막 1실(14평)당 사용자 10명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. 야영데크 및 텐트장 1개소당 사용자 각 4명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제9조(시설사용료의 면제)①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사 등에 한하여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막8평 사용자의 차량 1대 및 13평 사용자의 차량 2대 2. 복합산막 1실(14평) 사용자의 차량 3대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10조(위탁관리)① ~ ②<생 략> ③위탁관리 계약기간은 <u>1년 단위</u> 로 한다 | 3. 약영네크 및 텐트장 사용자의 차량 각 1대 4. 제8조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<u>해당하는 자의 차량</u> 제10조(위탁관리)① ~ ②<현행과 같음> ③..... <u>3년 이내</u> |

| 현행 | | | | 개정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【별표2】 시설사용요금표 (단위 : 원) | | | | 【별표2】 시설사용요금표 (단위 : 원) | | | |
| 구분 | 사용시간 | 요금 | 비고 | 구분 | 사용시간 | 요금 | 비고 |
|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| 1대/1일 | 3,000 5,000 | ※ 1일사용료는 당일 09:00부터 다음날 11시까지 |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| | | |
| 산박 산박 | 1동/1일 | 20,000 30,000 40,000 60,000 50,000 | 로 하며 11시이 후는 1일 추가 요금징수 | 산 산 산 산 산 막 막 | ○ <삭제> ○ <삭제> ○ 8평 ○ 13평 ○ <삭제> | <삭제> <삭제> <삭제> | |
| 아영장 아영장 아영장 | <신설> <신설> | 100,000 10,000 | | 복합산막 복합산막 | ○ 14평 ○ 회의실 1실/1일 1시간당 | | |
| | | 3,000 5,000 7,000 | | 영장 영장 영장 | ○ 텐트장 ○ 야영데크 ○ <삭제> 1개소/1일 | <삭제> | |

관련 법령(발췌)

【산림법】

- 제33조(휴양림의 입장료 등) ① 휴양림의 관리·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

【산림법시행규칙】

- 제31조(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)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·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
1. 국빈 및 그 수행자
 2.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 3.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
 4. 국·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
 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6. 장애인
 7. 국가유공자
 8. 제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(국·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한다

입 법 예 고 결 과

- 조례명 : 영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
- 예고방법 : 영주시보 제229호에 게제
- 예고일 : 2000년 4월 17일
- 예고기간 : 2000년 4월 17일 ~ 2000년 5월 8일 (20일간)
- 의견제출 : 제출된 의견없음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27호
- 의 안 명 :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

2. 개정이유

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가.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함 (안 제8조제10호 내지 제13호)

- 산막 1동당 사용자 8평 4명 및 13평 6명까지
- 복합산막 1실(14평)당 사용자 10명까지
- 야영데크 및 텐트장 1개소당 사용자 각 4명까지
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나.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함 (안 제9조)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에 회의 실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던 것을 다른 시설물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
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
 - 산막 8평 사용자의 차량 1대 및 13평 사용자의 차량 2대
 - 복합산막 1실(14평) 사용자의 차량 3대
 - 야영데크 및 텐트장 사용자의 차량 각 1대
 - 조례 제8조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

다. 위탁관리 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이내로 함 (안 제10조)

라. 시설사용요금표중 현재까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란을 삭제함
(안 [별표2])

4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□ 개정관련 법적 측면에서는

-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
- 산림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위탁관련 규정에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□ 개정의 필요성 · 타당성 측면에서는

- 안 제8조제10호 내지 제13호 입장료와 안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 확대의 경우
 - 휴양림 운영은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국민의 보건휴양 · 정서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주목적이고
 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외 부대수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
 -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이중징수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 해소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

- 입장료 등은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·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므로 현재 적자 상태인 영주시 자연휴양림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조례(안) 제10조의 위탁관리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이내로 하려는 것은 수탁자에게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한 경험축적과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0. 7.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